

제 1 장

학 칙

제13장 모집단위 간 이동

제58조(모집단위 간 이동의 시기와 방법) ① 학사과정의 모집단위 간 이동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학정원 외로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20% 범위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학기초 1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 학부(과)에서 사범대학의 학과로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할 때에는 면접고사와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교직 적격자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23)

② 모집단위 간 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절차) 모집단위 간 이동을 지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원서에 관련 학장의 승인서와 이미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1.11.23)

제60조(과목 이수)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학점에도 불구하고 전공학점은 해당 학과(부)의 학점인정에 따라 해당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1조(대학원과정의 전공변경) ① 대학원과정의 전공변경은 1학기 이수 후 2학기 등록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이미 이수한 학점은 변경 후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

③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성적증명서
3. 소속 학과(전공) 주임교수 승인서

제14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62조(휴학 절차) ① 학생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내에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휴학기간) ①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휴학 기간과 육아휴학(임신·출산·육아 등) 기간(2년) 및 창업휴학 기간(2년)은 포함하지 않으며,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3. 7. 30.), (개정 2014. 3. 31.)

②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휴학 기간과 육아휴학(임신·출산·육아 등)기간(2년), 국가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에 따른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1.2.22.), (개정 2013.7.30.), (개정 2017.11.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여야 할 학생이 해당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필수과목이 없고, 다음 학기에만 있을 때에는 1학기 동안의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4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서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65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제적) ① 학사과정은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병역의무를 필하고 제대한 학생은 1년)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학생
2. 삭제 (2016. 11. 21.)
3. 학기마다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개정 2011.11.23)
4. 이중학적을 가진 학생

② 수강료는 학기마다 정한다.

제25조(강사료) 계절수업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모집단위간 이동

제26조(모집단위간 이동) ① 학장은 모집단위간 이동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학과(전공)별 예정인원과 접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집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출·입 학과(부)장과 학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모집단위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모집단위간 이동 희망자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대학 동일계열, 동일대학, 타 대학 동일계열, 타 대학 순으로 배정 전에 이수한 전체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으로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정원칙과 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8장 휴학 및 복학

제27조(휴학) ① 학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휴학을 허가하되, 병역휴학, 질병휴학과 육아휴학(임신·출산·육아 등)과 창업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을 지나서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4.), (개정 2014. 3. 31.)

1. 일반휴학: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
2. 병역휴학: 재학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학
3. 질병휴학: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휴학
4. 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휴학
5. 창업휴학: 재학 중 창업을 수행하기 위한 휴학 (호 신설 2014. 3. 31.)

② 1학년 1학기에 가정 사정으로 인한 신입생의 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역휴학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들을, 질병휴학은 전문의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육아휴학은 전문의가 발행한 임신·출산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창업휴학은 창업·현장실습교육센터장이 발행한 창업휴학승인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개정 2017.8.25.)

④ 일반휴학 기간 중 병역의무 발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병역휴학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병역휴학자가 군 복무 중에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⑥ 창업휴학자가 창업·현장실습교육센터에서 학기 중 1회 이상 실시하는 창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일반휴학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4.3.31.) (개정 2017.8.25.)

제28조(복학) ① 복학은 등록기간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휴학자 중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을 경과하여 전역하는 학생이 휴가 등으로 전역일(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출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전역일 이전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휴가증 사본
2. 전역예정증명서
3. 소속부대장추천서

② 복학은 해당 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병역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